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한 개정 「변호사시험법」(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기간, 반환범위, 반환 사유 구체화

1)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의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범위와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신청하도록 하고 반환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 절차 및 반환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나. 법령용어 순화 및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를 “응시원서 제출절차, 합격자 공고”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출원기간”을 “응시원서 제출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응시 수수료 반환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 단서 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2.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본인이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이나 격리대상자

판정을 받은 경우

3. 시험일 이전 7일 이내에 발생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의 사망

4. 천재지변 기타 재난상황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 ---------- ---------- ---------- ---------- ---------- 응시원서 제출절차, 합격자 공고----------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응시자격) ①·② (생 략)	제3조(응시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응시원서 제출기간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응시 수수료) ①·② (생략)	제13조(응시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낸 응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응시 수수료 반환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법 제20조제2항 단서 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2.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본인이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이나 격리대상자 판정을 받은 경우

	3. 시험일 이전 7일 이내에 발생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의 사망 4. 천재지변 기타 재난상황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조인력과	
연 락 처	(02) 2110 - 3389